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7. 2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 7. 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9. 7. 16.

다. 상정일자 : 제23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9. 7. 23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의약과장 이주영

가. 제안이유

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, 지원 등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
조례로 규정하고 준수함으로써,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
마련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2)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내용(안 제4조)
- 3)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8조)
 - 위탁기관 모집방법 및 위탁기간 등
 - 수탁운영자의 의무, 위탁의 취소, 운영지원
- 4)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제한(안 제9조)

5)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(최종익 전문위원)

(1)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

- 동 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1일 센터 개소 이후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·복지·권리보장과 정신건강의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,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.
-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전국 등록정신장애인은 9만 8,643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8년 10만 2,140명으로 2015년 대비 3,497명 3.5% 늘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, 마포구는 2018년 기준으로 등록정신장애인은 501명이지만, 주민등록인구의 1%를 적용하는 정신추계중증정신질환자 수는 마포구의 경우 3,751명이 되겠음.

〈표 1〉 연도별 등록정신장애인 현황 (단위 : 명)

구분	2015	2016	2017	2018	비고
전국	98,643	100,069	101,175	102,140	증가추세
서울시	15,943	16,139	16,326	16,365	증가추세
마포구	516	500	493	501	-

(출처: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)

〈표 2〉 마포구 의료기관 (단위 : 개소)

계	병원	의원	치과병의원	한의원	요양병원	한방병원
717	2	349	203	160	2	1

(출처: 2018 제33회 마포통계연보)

〈표 3〉 마포구 정신건강증진시설

(단위 : 개소)

계	정신의료기관	정신요양시설	정신재활시설	정신건강복지센터	비고
27	22	-	4	1	의료기관 중 입원실 x

(출처: 마포구 보건소)

-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, 광진구 등 23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. 따라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지원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됨.

(2) 조례조문 주요내용 검토

- 본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으로는 구청장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 사업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고 수탁운영자의 의무 및 운영예산 지원과 수탁운영자의 운영현황을 관리감독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5조의 운영 위탁 등에 있어서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제6항8)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9)에 의거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보건복지부 2018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¹⁰⁾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였음. 또한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제5항¹¹⁾의 정신건강증진

8) **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**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9) **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증진시설
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
10) 보건복지부 ‘2018 건강사업안내’ 다) 사업수탁기관의 선정·계약 (P23~23)

-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 증진시설 (중략)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 과정은 ~~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경우 우선 준용할 수 있음(중략)~~ - 이 때, 신청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, 업무의 수행능력,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. 선정된 수탁기관의 ~~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~~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며 다만,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

11) **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**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6. 2. 3., 2019. 1. 15.>

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(가.~라. 바.~사. 생략)
- 마.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

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에 근거한 바, 전체적 조례 체계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일부 자치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센터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사례 등이 있음에 제정 조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첨부 수정안 참조)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